

# 제작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안)

## 1. 제작사양서

- 건 명 : 2016년도 강북구 소식지 인쇄 단가계약  
(기획 및 디자인 성과물 별도 제공, 인쇄용 필름은 별도 제공하지 않음)
- 규 격 : 8절 12면(면수 탄력적 발간)
- 색 도 : 4색도 양면
- 지 질 : 백색 중질지 60g
- 발행부수 : 1,668,000부(139,000부 × 12회, 발행부수 탄력적 발간)
- 발행주기 : 매월 1회
- 연간 인쇄횟수 : 총12회
- 납품기한 : 인쇄필름 확정 후 2일 이내로 매월 반상회일인 25일 오전 9시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오전 9시까지)

## 2. 계약특수조건

2016년도 강북구 소식지 인쇄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를 “강북구”라 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강북구 소식지 인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소식지 발행주기는 매월 1회이며 총 12회 발행한다.

[제2조] ①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인쇄문화 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업 등록을 필하고

② 4×6 2절 4색도 운전인쇄기, 접지기, 제본기 등 인쇄에 필요한 기기를 자체 보유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자로서, 우리구의 제작사양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제3조] 부수, 발행횟수, 면수는 강북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면당 단가금액은 ‘계약금액 총액/(12면 × 139,000부 × 12회)’로 한다. 부수조정과 면수조정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1면당 단가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재산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강북구 요청 시 합의하여 2017년도 연간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제작사양 및 납품조건이 동일한 경우 2016년도 단가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상대자는 편집기획디자인 업체로부터 인쇄를 위한 성과품을 인도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인쇄 필름을 출력하여 강북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북구 담당 공무원과 편집기획디자인 업체의 최종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상대자는 인쇄필름 확정 후 2일 이내로 납품을 완료해야한다. 납품 시에는 소식지 8절 12면을 접지삽지 및 제본하여 각 동 주민센터 및 강북구 지정장소에 소요량을 납품기한에 맞춰 납품하고, 강북구가 별도 송부한 발송자 명단에 의거하여 우편 발송(발송봉투 제작, 소식지 삽입, 봉합작업 포함)을 납품기한에 맞춰 발송하여야 한다. 납품을 위한 운송비, 우편 발송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일 오전 9시까지** 지정한 장소(13개 동 주민센터, 구청, 관내 유관기관, 다중 이용시설 등)로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품질 불량 등의 하자(흠) 발생 시 전량을 12시간 이내에 재제작 및 배부 완료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초 인쇄 작업 전에 인쇄용지 샘플을 강북구에 제출하여 인쇄용지를 확정 받아야 한다. 색도는 강북구가 최초 제시한 컬러샘플에 맞추도록 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색도 및 인쇄수준이 미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어떠한 이의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납품 시에는 8절 12면을 접어서 **250매 단위**로 묶어 납품하여야 하며, 우천 시에는 눈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어겨 소식지 배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강북구의 판단 하에 인쇄품질이 미달된 경우(색도와 지질이 낮거나 색도와 지질이계약수행 중에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및 페이지 누락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어떠한 이의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① 기타 계약특수조건에 누락되었거나 관련 법규에 없는 불분명한 사항 등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③ 본 제작사양서와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